

부산동여자고등학교 화장실 화변기 교체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특수조건 등 및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 계약 결격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 견적 제출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부산동여자고등학교 노후 위생설비(화변기) 교체 공사

나. 공사개요: **화변기 50개소 철거 및 양변기 설치**

(※내역서 참고)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공휴일포함)(※겨울방학 기간 내(2026.12.30.~2027.1.29.) 완료)

라.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동안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1층 행정실에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1.(월) 10:00 ~ 2026. 9. 30.(수)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수) 11:00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사. 공사금액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기초금액 (A+B)
149,876,000	136,250,909	13,625,091	0	149,876,00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0원

아. 기타사항: 교직원들이 화장실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이 아닙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2,691,271원)**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건설업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불허, 지사 투찰 불허)

나.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전자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4. 견적서 제출

가. 이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 공고문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5.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pm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하고,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

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고 건의 A값

(단위 : 원)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	-	-	2,691,271	-	-	-	2,691,271

-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 마.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서대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유의 사항

-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나.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시까지 **절수설비 설치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 나. 하도급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기타사항

-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 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견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공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 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 제보 신고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민원·신고→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

라. 기타 문의 사항 연락처

1) 과업, 견적 제출,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051-610-5805)

2) 나라장터(G2B)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붙임
1. 공사내역서 1부.
 2. 지방서 1부.
 3. 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 3-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5.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1부.

2026. 9. 21.

부 산 동 여 자 고 등 학 교 장

【붙임 3】 계약이행 특수조건

계 약 이 행 특 수 조 건

발주기관인 부산동여자고등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적용함에 동의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전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를 추진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에 대한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 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이행에 투입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을 유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부산 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 포함)의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첨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2026. . .

내용 확인자: 대표 (인)

【붙임3-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 전 보 건 관 리 준 수 서 약 서

부산동여자고등학교로부터 도급받은 ‘화변기 교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 수칙 및 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부산동여자고등학교 화변기 교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부산동여자고등학교 화변기 교체 공사의 근로자 안전 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동여자고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부산동여자고등학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부산동여자고등학교로부터 도급받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부산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계약명	부산동여자고등학교 화변기 교체 공사
■ 계약명	(대표자) (051-000-0000, 010-)
■ 작업기간	2026.00.00.~00.00 (00일간)
■ 계약금액	금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원)
■ 작업장소	부산동여자고등학교 화장실
■ 작업 투입 종사자수	
■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010-)
■ 최근 산업재해발생현황(3년간)	☐ 발생(건수: 건) ☐ 미발생 * 아래 안전조치 세부계획을 면밀히 작성하여 동일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안전조치 세부계획	
①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 요인 파악 및 그에 따른 안전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고소작업(사다리, 로프)중 추락 위험 ② 유해물질 취급에 따른 중독 위험 ③ 화학물질(신나 등) 혼합 시 화재 위험 ④ 용접작업장 내 화재 발생 위험 ⑤ 밀폐작업 중 질식 위험 ⑥ 감전 위험 ⑦ 세척 작업 시 신체 노출 위험 ⑧ 작업장 이동 시 미끄러짐 위험 ⑨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 ▶ 유해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① 2m 이상 고소작업: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작업발판, 안전대 사용 / 사다리 작업 시 2인1조 작업 및 하부감시자 배치, 전도방지 부착 사다리 사용 / 로프작업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설치 ②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③ 화재발생 대비 작업반경 내 소화기 배치 ④ 누전차단기 및 불티 방지포 설치 ⑤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⑥ 절연용품 착용, 전선 피복상태 사전확인 ⑦ 개인보호구 착용 및 세척액 노출 시 즉시 세척 및 병원 내원, 누출 위험 세척액 별도 보관 ⑧ 작업장 바닥 물기 제거 ⑨ 폭염작업 시 휴식시간 부여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7.17.시행)」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준수
② 사용 기계·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법 제63조)	①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장비 사전 점검 후 작업 특성에 맞는 적합한 용품 사용 - 안전 장비 목록 예사 발판, 고소작업대, 사다리, 산소측정기,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소화기, 고글, 보호복 등 ②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하고, 작업중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 - 예사: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동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③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법 제63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고소작업 및 폭염작업 시 특히 유해 추락방지 및 온열질환 예방 안전조치)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④ 안전보건교육 (법 제64조제①항제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계획:) ☐ 미준수
⑤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법 제64조제①항제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산업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현장보존→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소방서(119), 병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026. . . 대표 (인)	

뒷면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해당 항목에 ✓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2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점검(개인보호구 착용 확인 등) 및 조치사항 적정 여부		
4	안전보건교육(계획) 적정 여부		
5	비상대책(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등) 적정 여부		

계약담당자: _____(서명), 관리감독자: _____(서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업 전 작업공중, 공정 및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추락, 감전 등)
- (안전보건관리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세부 안전보건관리 대책, 위험성감소 대책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적용
ex)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②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ex)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③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확인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추락, **온열질환 예방조치** 등 확인 또는 점검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및 착용 여부,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고소작업) 시 안전조치 취하고 작업 준수 여부 특히 확인
 - * 기본 고소작업: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ex)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7.17.시행)」 및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준수
 - * ▲ 폭염작업 예상되는 경우 ①작업장소에 온·습도계 상시 비치 ②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예방방법 등의 주지 ③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④온열질환 발생 또는 의심되는 경우 119에 신고, 응급조치 ▲ 체감온도 31℃ 이상 시 ①온·습도 조절장치 설치·가동 ②작업시간대 조정 ③적절한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 조치 ▲ 체감온도 33℃ 이상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 소금과 음료수 등을 충분히 비치 등
 - *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 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랭장구, 응급조치) 준수

④ 안전보건교육 시행여부

-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 및 증빙자료 제출 계획
ex1)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 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ex2)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계획 제출)

⑤ 비상대책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비상연락체계
ex)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작업개시 전에 안전작업허가서(붙임) 별도 제출 대상임을 안내하여 허가받도록 할 것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위험작업 예시

- ▲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 ▲ 굴착·전기·고소작업 ▲ 증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필요 시】 안전작업허가서(유해·위험 작업 시 사전 제출 및 허가)

안전작업허가서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허가요청일시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작업내용			작업장소	
장비투입			작업인원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작업종류	점검사항(※ 해당 항목에 √ 체크)		업체확인	학교확인
☐ 밀폐공간 (물탱크)	1. 작업 전 송풍기 등의 환기조치 여부			
	2. 산소(18~23.5%), 이산화탄소(1.5%미만), 일산화탄소(30ppm미만), 황화수소10ppm미만 측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착용여부			
	4. 비상연락수단 및 작업자 명단 확보여부			
	5. 특별교육 실시여부 (일용근로자 2시간, 그 외 16시간 교육)			
☐ 고소작업	1. 사다리 파손 및 2인1조 작업여부			
	2. 유리창 청소 작업 시 안전모, 안전대(걸고리 착용 포함) 구명줄, 로프 결속부 안전확보 여부			
	3. 고소 작업대 이용시 안전모 및 안전대, 걸고리 사용여부			
☐ 화기작업	1. 작업 전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여부			
	2. 소화기 준비 여부			
	3. 용접 및 산소절단 작업 시 불티방지포 사용여부			
☐ 전기취급	1. 작업 전 절연보호구 착용 여부			
	2. 정전 작업 시 타 작업자 전원투입 금지조치 여부			
	3. 유자격자 여부 확인(면허, 자격증 등 사본확인)			
☐ 중량물	1.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여부(고소작업대 포함)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특별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 (교육이수증 확인 등)			
☐ 기타요청사항				
안전작업허가서 재신청 요건		작업 허가 시간이 정상근무시간 초과 시		
		작업 내용, 안전 요구 사항 등 제반 조건 변동 시		
작업관리 부서	확인사항	☐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 보완 사항 조치 후 작업(내용:) ※ 근무 교대 시간, 휴게시간이 포함될 경우 작업 재개 시 안전 상태 재확인 후 작업안내		
	확인자	소속	직책	성명
		부산동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	(인)
허가승인 부서	허가자	소속	직책	성명
		부산동여자고등학교	교장	(인)

【붙임5】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건축주 성명	(전화)		
건축물 주소			
건축설계(감리)사무소	대표		
용 도(주택은 세대수)		건축연면적(m ²)	

① 절수설비 설치(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절 수 설 비 용 도		제조회사	모델명(제품명)	수량 (개)	적합여부 (환경표지, 시험성적서 등)
수도꼭지	샤 위 용				
	샤워.욕조용				
	세 면 용				
	세면.샤워용				
	주 방 용				
대변기	로 탱 크 형				
	세척밸브부착형				
소 변 기					
기타 절수기기					

②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 (수도법 제14조, 시행령 제24조)

→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함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상기 수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0000엔지니어링

(서명 또는 인)

부산동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 구비서류: 설치된 절수설비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1부, 설치현장사진 1부.
- ※ “확인자란”에 건축허가의 경우 시공자 및 감리자, 건축신고(감리자가 없는 경우)의 경우 건축주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 상기 ①, ②를 위반하였을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